

이사회규정

소관부서 : 총무팀
제정 : 1962. 6. 1.
개정 : 1982. 9. 1.
1985. 5. 10.
1993. 2. 15.
2012. 3. 6.
2014. 5. 30.
2024. 01. 2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제2장 구성

제4조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서 구성한다.

제5조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인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동일 직급 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그 순서를 선임자 순으로 하며, 그 일자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3장 회 의

제6조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의장은 그 개최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를 소집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5조 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8조의 2 (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 아닌 자도 출석케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부의 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

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다. 정관의 변경

라. 자본의 감소

마.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바.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사.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아.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해임 및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자.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차.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타.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 이사 보수의 결정

파.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및 변경

하.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への 보고

거.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

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가.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나. 사업계획 및 중요 신규사업

다.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및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라. 본점, 지점 및 해외현지법인의 설치, 이전 및 폐지

마. 명의개서대리인 지정 및 변경

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사.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가. 건별 100억원 이상에 대한 자회사 및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나. 건별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다. 건별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시설투자

라. 건별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

- 마.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 바. 자기주식 신탁계약 등의 체결 또는 해지
- 사. 신주의 발행시 실권주 및 단주수의 처리
- 아. 사채의 모집 및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자. 해외주식예탁증서(DR) 발행 및 해외증권(DR, 주식) 상장
- 차. 준비금의 자본전입
- 카. 자기주식의 소각
- 타. 중간배당
- 파. 신주의 발행
- 4.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가. 대표이사의 선임
 - 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다.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라. 이사회규정 및 이사회내 각 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 마. 이사의 경업, 겸직 및 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승인
 - 바.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 5.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 나. 회사가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 다.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한도 허용 승인
 - 라. 리스크관리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 마.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 6. 기타
 - 가.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나.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다.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기타 법령, 규정 또는 예규에 의해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

제11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⑥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단, 감사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위임사항)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이사회산하에 리스크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제10조 5항 가목을 제외한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본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총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이사를 보좌하고 본회의 사무를 정리한다.

제15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